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곽규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36

발의연월일: 2025. 3. 4.

발 의 자: 곽규택·정성국·서지영

이헌승 • 박수영 • 김도읍

주진우 • 백종헌 • 정연욱

김희정 • 이성권 • 김대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2024년 1월 「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」이 공포되었고, 정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을 통해 도시개발·역세권 개발·공공주택 건설·복합환승센터 조성·도심융합특구개발·도시재생 등 사업유형을 다각화하여 고밀도 입체 개발을 계획 및 추진중임.

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자를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.

또한, 철도지하화에 대한 우선 시공을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투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와 융자 외에 국가의 비용보조 및 융자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시키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기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,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자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- 나. 국가도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- 1. 지방자치단체
- 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자

제13조제4항 중 "지방자치단체는"을 "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9조(사업시행자) 시·도지사는	제9조(사업시행자)		
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			
을 출자받은 자를 철도지하화			
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(이하			
"사업시행자"라 한다)로 지정한			
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철도부지개발사업의</u>		
	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		
	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		
	는 자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		
	<u>정할 수 있다.</u>		
<u><신 설></u>	1. 지방자치단체		
<u><신 설></u>	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		
	<u>방공사</u>		
<u><신 설></u>	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		
	는 바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		
	선정된 자		
제13조(비용부담의 원칙) ① ~	제13조(비용부담의 원칙) ① ~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	4		
고 <u>지방자치단체는</u> 사업시행자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-		
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			
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			
자할 수 있다.	<u>.</u>		